

한 국 농 어 촌 공 사 및 농 지 관 리 기 금 법
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2021. 2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농 지 과)

1. 개정이유

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농지연금제도 도입 목적 달성을 위해 담보농지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농지연금의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‘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’를 추가하거나 구체적 범위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을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(안 제19조의9 개정)
-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조항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세부적인 위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고령농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제도의 취지를 효율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함
- 나. 승계가 가능한 배우자의 범위를 시행령의 규정내용과 일치되도록 구체화하고 배우자의 요건을 각 호로 규정(안 제19조의11 개정)
- 승계조건으로 가입한 농업인의 배우자에 한해 연금승계가 가능하나 법령상 배우자로 단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9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

② 제1항에 따른 담보농지 의 구체적 범위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제19조의11 중 “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영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연금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
2.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영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과 혼인관계

에 있을 것

3.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 체결시 영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농업인이 배우자에게 농지의 소유권 이전 및 농지연금 채무의 인수를 약정할 것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의9(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)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(이하 “담보농지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	제19조의9(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
<신설>	② 제1항에 따른 담보농지의 구체적 범위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제19조의11(배우자의 범위) 영 제19조의10제3항제2호 본문·제3호 및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·나목에서 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”란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영 제19조의10제3	제19조의11(배우자의 범위)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항제1호의 농업인과 혼인관계
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1.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
농업인이 농지연금 지원을 신
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
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
2.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
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
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영
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
인과 혼인관계에 있을 것
3.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
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
체결시 영 제19조의10제3항제
1호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
농업인이 배우자에게 농지의
소유권 이전 및 농지연금 채
무의 인수를 약정할 것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42